

# 「汪辜(왕고)會談」概要

- 中國·臺灣間 싱가포르 會談 -

1993. 12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본 자료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발간한  
( '93.8.12) 「辜汪會談概要(중국·대만간 싱가포르 회담 개요)」를 번역한 것 입니다.  
관련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I. 서론	1
II. 「왕고회담」의 시작	4
III. 회담 경과	7
1. 예비접촉	
2. 본회담과 협정체결	
IV. 회담 결과	16
1.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	
2.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에 관한 협정	
3.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4. 「왕고회담」 공동협정	
V. 회담의 의의와 영향	23

Ⅵ. 부 록 .....27

1. 「왕고회담」 예비접촉 합의
2. 「왕고회담」 일정표
3.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
4.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
5.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6. 「왕고회담」 공동협정
7. 邱 부회장 겸 비서장 북경공항 도착 담화
8. 辜회장 싱가포르공항 도착 기자회견
9. 辜회장 제1차회담 관련 담화
10. 辜회장 「왕고회담」관련 기자회견
11. 辜회장 中正공항 도착 담화

# I. 서론

1987년 11월 2일부터 대만정부는 인도적 입장에서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을 허용하였다. 그후 해협 양안간에는 사회, 문화, 경제·무역 등 각 분야에 걸쳐 민간교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1990년까지 1백만 이상의 대만주민들이 한 차례 이상 친지방문, 운동경기, 취재, 시찰 또는 회의 참가를 목적으로 대륙을 방문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병문안, 장례식 참석, 관광, 방문 및 거주를 목적으로 대만을 찾은 대륙 동포도 약 1만명에 이른다. 홍콩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양안간 간접무역액이 1989년에는 약 35억 달러에 달하였고, 1990년에는 40억 3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양안간 여러분야에 걸친 민간교류의 급속한 진전은 양안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밀수, 밀입국, 범죄 및 기타 민사분쟁 등 갖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바,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아직도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는 정책 -- 「一國兩制」 --을 취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대만정부로 하여금 국가안전 확보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에 의한 對대륙 교류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대만정부는 3개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륙문제를 기획, 처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3개의 기구는 『국가통일위원회』, 『행정원 대륙위원회』 그리고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이다. 이들 3개 기구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가통일위원회는 총통의 양안관계 정책결정 자문기관이다.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대륙문제에 대한 정책 조정과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해협교류기금회는 양안간 교류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대만정부는 또한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여 3단계 국가통일계획을 제시하였다.

단기는 호혜교류단계, 중기는 상호신뢰협력단계, 장기는 통일협상단계이다.

이들 3단계는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첫단계가 성숙된 이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나, 이들 단계간 시간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주민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양안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국가통일강령」의 1단계 목표인 호혜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8일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설립을 비준하였으며, 辜振甫가 동 기금회 회장이 되었다. 같은 해 3월 9일부터 동 기금회는 정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4월 9일 행정원 대륙위원회와 동 기금회는 위탁계약을 체결, 정부가 위탁한 문제에 대한 처리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중국도 해협교류기금회 설립 10개월 후인 1991년 12월 16일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하였으며, 汪道涵이 회장에 임명되었다.

## II. 왕고회담의 시작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회장은 1992년 1월 8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에 서한을 발송하여 회장과 부회장 및 비서장의 대륙방문을 초청, 쌍방간 연락과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는 즉각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그후 쌍방간에는 방문문제를 놓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서한을 교환하였다. 동년 8월 4일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이 다시 辜振甫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연내에 적당한 시기, 적당한 장소에서 경제발전 문제와 쌍방간 접촉문제에 대해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다. 8월 14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행정원 대륙위원회 고위실무자는 해협양안관계협회의 초청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과거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사이에 업무상 몇차례에 걸친 접촉이 있었으나 항상 커다란 난관에 부딪혀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양안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해협교류기금회와 행정원 대륙위원회 고위실무자는 대륙과 대만의 양안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해협교류기금회가 이번

회담의 준비업무에 착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8월 22일 해협교류기금회 辜振甫 회장은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 汪道涵에게 초청 수락 회신을 보냈다. 辜振甫 회장은 회신에서 최근 양안간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쌍방이 성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양안관계의 진전과 양 기구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辜振甫 회장은 동년 10월중 또는 적당한 시기에 싱가포르에서 양 기구의 업무 그리고 양안간 문화, 경제·무역교류 문제에 대한 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9월 30일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적당한 시기에 회담을 진행하는 본 기금회의 제의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그후 쌍방은 「양안 문서 사실증명」,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와 보상」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 및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개념정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회담」 개최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1월 쌍방이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해서는 쌍방 기구가 구두로 자기측 견해를 표명하기로 하는 선에 합의함으로써 이번 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는 11월말의 서한에서 12월초에 「왕고회담」 준비협상을 갖고 12월말에는 본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회담개최 장소는 辜 회장이 제시한 싱가포르를 적극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입법의원 선거와 구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된 시기에 회

담을 개최하지는 못할 상황이었다.

1993년 3월 2일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는 다시 「왕고회담」을 3월 하순이나 4월초에 개최하고, 이를 위해 양안의 적당한 장소에서 예비 접촉을 갖자는 제의를 하였다.

3월 12일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상무 부회장 唐樹備와 부회장 겸 비서장 鄒哲開 연명의 서한을 통해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부회장 겸 비서장 邱進益의 북경 방문을 초청하였다.

3월 18일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왕고회담 배경설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회담이 「양안정부가 공식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민간단체 최고 책임자간 최초의 접촉」이며,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3월 23일 해협양안관계협회 책임자도 담화를 발표, 「왕고회담」은 민간의, 경제적, 실무적 성격의 회담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邱進益 비서장이 북경을 방문하여 회담관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같은 날 해협교류기금회 법률담당처 처장 許惠祐 일행은 북경을 방문하여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양안 문서 사실증명」과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와 보상」 문제에 대해 3차례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협양안관계협회 부비서장 孫亞夫와 「왕고회담」 예비접촉 절차문제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쌍방은 원칙적으로 4월 7일부터 해협교류기금회 부회장 邱進

益과 해협양안관계협회 상무 부회장 唐樹備가 북경에서 예비접촉을 진행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Ⅲ. 회담 경과

#### 1. 예비접촉

##### 1) 1단계 예비접촉

- 시 간 : 93년 4월 8일 - 4월 10일
- 장 소 : 북경(釣魚臺賓館, 貴賓樓飯店)
- 참가자 :

#### 해협교류기금회측

邱進益 (부회장 겸 비서장)  
石齊平 (부비서장)  
許惠祐 (법률담당처 처장)  
張全聲 (종합담당처 처장)  
吳 恕 (비서처 처장)  
孫起明 (문화담당처 부처장)  
蔣憲榮 (경제·무역담당처 부처장)  
林貴美 (법률담당처 부처장)

#### 해협양안관계협회측

唐樹備 (상무 부회장)  
鄒哲開 (부회장 겸 비서장)  
劉剛奇 (부비서장)  
孫亞夫 (부비서장)  
徐志勤 (전문위원)  
李亞飛 (종합부 주임)  
周 寧 (정보부 부주임)  
喬 峯 (비서부 부주임)

周慶生 (경제·무역담당처 전문위원) 劉建中 (협조부 부주임)

田忠勇 (비서처 전문위원)

林燕文 (비서처 전문위원)

王正磊 (비서처 전문위원)

林鳳飛 (법률담당처 주사)

陳淑華 (법률담당처 주사)

4월 3일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해협교류기금회 邱 부회장과 기타 13명의 관료에게 북경에서 해협양안관계협회측과의 예비접촉을 진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왕고회담과 예비접촉 배경설명서」를 공표하였다.

4월 8일과 10일 邱 부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부회장 唐樹備간에 두차례에 걸친 예비접촉을 진행하여 본회담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9일에는 대륙의 적십자 총회를 방문하였으며, 10일에는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간에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의」와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에 대한 협의」개최에 합의하였다. 11일에는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을 예방하였다.

이번 예비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이 본회담에 대해 합의하였다.

- ① 성격규정 : 쌍방은 「왕고회담」이 민간의, 업무적, 경제적, 기능적 성격을 띤 회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번 회담의 목적은 쌍방 기구간 협상제도를 구축하며, 민간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등 교류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회담일자 : 1993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하루를 연장 개최한다. 회담 이전에 2단계 예비접촉을 개최한다.
- ③ 회담장소 : 싱가포르
- ④ 회담인원 : 쌍방의 회담 참가자는 공히 1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⑤ 회담의제 :
  - 양 기구간 업무문제 : 쌍방은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금년 양안간 업무관련 논의 의제 확정 :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측 지역에 진입한 인원을 송환하는 문제, 해상 밀수와 납치 등과 관련된 범죄활동에 대한 처벌문제, 양안간 해상어업분쟁의 처리문제
  - 경제부문 : 대만 기업인의 대륙투자와 대륙 기업인의 대만 방문 등 문제, 양 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안간 민간경제교류회의 및 쌍방이 동의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공동개발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로 하였다.

- 문교·과학기술부문 : 청소년 상호교류, 과학기술교류, 양안 보도기관간 교류

아울러 쌍방은 싱가포르에서 「양안 공중서 사실증명」과 「양안 동기우 편물 조사·보상」 등 2개의 협정을 정식 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본회담 후 공동협정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 2) 2단계 예비접촉

- 시 간 : 93년 4월 23일 - 4월 26일
- 장 소 : 싱가포르 (海皇빌딩)
- 참가자 :

### 해협교류기금회

### 해협양안관계협회

邱進益 (부회장 겸 비서장)

唐樹備 (상무 부회장)

李慶平 (부비서장)

鄒哲開 (부회장 겸 비서장)

張宗麟 (경제·무역담당처 처장)

孫亞夫 (부비서장)

許惠祐 (법률담당처 처장)

徐志勤 (전문위원)

張全聲 (종합담당처 처장)

周 寧 (정보부 부주임)

何武良 (법률담당처 전문위원)

馬曉光 (종합부원)

林源芳 (여행담당처 전문위원)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간의 제1단계 예비접촉이 끝난후, 해협교류기금회는 즉각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입법원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친 뒤 선발대, 2단계 예비접촉조, 본회담조 등 3개의 조를 편성하여 싱가포르에 파견하였다.

4월 19일 해협교류기금회는 李慶平 부비서장 이하 종합담당처 처장 張全聲, 비서처 부처장 徐建 등 6명을 선발대원으로 구성,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회담장, 회담 참가자의 숙박, 기자회견장 설치문제 등 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4월 21일 해협양안관계협회도 선발대로 徐志勤과 喬鋒을 싱가포르에 파견하였다.

4월 22일에는 해협교류기금회 邱 부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唐 부회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23일 오전 邱 부회장은 싱가포르 주재 대만 대표부를 방문하였으며, 회담장을 시찰하고, 싱가포르 외교부 부상임비서 施澤文을 예방하였다. 같은날 오후에는 海皇빌딩 26층에서 邱 부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唐 부회장 그리고 양 기구 관련 인사들간에 2단계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쌍방은 먼저 본회담 절차 및 의제를 확정하고, 접촉의 제도화와 회담방식 및 경제교류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4월 24일 오전 해협교류기금회 법률담당처 許惠祐 처장, 何武良 전문위원 그리고 해협양안관계협회 정보부 부주임 周寧, 종합부 馬曉光이 업무관련 협의를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이 다시 회동하여 회담업무, 공동협정의 구조와 내용, 문교·과학기술교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4월 25일과 26일 오전에는 李 부비서장과 許惠祐 법률담당처 처장, 何武良 전문위원 그리고 해협양안관계협회 孫亞夫 부비서장, 정보부 부주임 周寧, 종합부 馬曉光 등이 업무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공동협정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26일 오후에는 辜 회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싱가포르 내각 고문 李光耀를 예방하였다.

## 2. 본회담과 협정체결

- 시 간 : 93년 4월 27일 - 4월 29일
- 장 소 : 싱가포르 (海峯빌딩)
- 참가자 :

해협교류기금회 대표단 17명

해협양안관계협회 대표단 15명

본회담 대표 10명

본회담 대표 10명

辜振甫 (회장)

汪道涵 (회장)

邱進益 (부회장 겸 비서장)

唐樹備 (상무 부회장)

石齊平 (부비서장)

鄒哲開 (부회장 겸 비서장)

李慶平 (부비서장)

劉剛奇 (부비서장)

朱榮智 (문화담당처 처장)

孫亞夫 (부비서장)

張宗麟 (경제·무역담당처 처장)

徐志勤 (전문위원)

許惠祐 (법률담당처 처장)

李亞飛 (종합부 주임)

張全聲 (종합담당처 처장)

劉建中 (협조부 부주임)

何武良 (법률담당처 전문위원)

周 寧 (정보부 부주임)

林源芳 (여행담당처 전문위원)

馬曉光 (종합부원)

수행원 7명

辜嚴倬雲 (辜 회장 부인)  
徐 建 (비서처 부처장)  
王正磊 (비서처 전문위원)  
田忠勇 (비서처 전문위원)  
呂國霞 (비서처 전문위원)  
和家麟 (문화담당처 주사)  
王中倍 (경제·무역담당처 주사)

수행원 5명

孫維聰 (汪 회장 부인)  
張志蛟 (비서)  
張壯民 (唐樹備 비서)  
喬 鋒 (비서부 부주임)  
田曉玲 (종합부원)

4월 27일 오전 해협교류기금회 辜振甫 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이 海皇빌딩 4층에서 제1차 본회담에 들어가 기본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담도중 汪 회장이 양안간 직접 「3통」을 의제에 상정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는 예비접촉시 합의사항과 부합되지 않아 辜 회장이 이를 거부하였다.

오후에는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 그리고 쌍방 각기 9명의 대표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회담을 진행, 비서장급 회담의 장소와 경제교류문제 이외의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다.

28일 오전 辜 회장은 싱가포르 제1부총리 王鼎昌을 예방하였으며,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 등은 海皇빌딩에서 회담을 계속하였다. 邱 부회장

은 먼저 27일자 汪 회장의 담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3통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륙투자 대만 기업인의 권익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唐 부회장은 중국 「국무원」이 이미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22조를 두고 있으며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여러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에도 대륙투자 대만 기업인의 권익보장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본회담 개최 이전인 오후 3시부터 辜 회장, 邱 부회장 그리고 汪 회장과 唐 부회장이 30분 동안 협의한 끝에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협정체결 의식을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辜 회장과 汪 회장이 쌍방의 대표단을 대동하고 15분간 회의를 진행한 직후 邱 부회장과 唐 부회장이 쌍방간 견해차가 큰 경제교류 문제를 논의하여 저녁이 되어서야 협정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협정문 서명 의식은 4월 29일 오전 10시 40분 海皇빌딩 4층에서 거행되었으며, 辜振甫 회장과 汪道涵 회장이 쌍방 기구를 대표하여 체결하였다.

쌍방은 먼저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과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문을 교환한 후,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왕고회담 공동협정」을 체결하였다.

## IV. 회담 결과

해협교류기금회는 설립 초기에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에 「문서사실증명」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후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설립되자 양 기구는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과 「양안 동기우편물 조사·보상 문제」에 대해 약 반년에 걸친 협의끝에 1993년 3월 비로소 합의에 도달하였다. 4월초에는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정식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

최근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쌍방은 이번 회담중 연락과 회담의 제도화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외에 금번 회담 결과를 종합한 「왕고회담 공동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들 협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 1.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

양안간 민간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교부, 거주, 거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종 증명서를 상대측 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의 법률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륙의 인구가 방대하고 기관이 많음으로써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만약 모든 문서를 관대하게 인정해 줄 경우 진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엄격하게 취급할 경우에는 민중에게 갖가지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간단한 검사 절차를 거쳐 양안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쌍방은 문서의 진위를 감정하는 방법을 상호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해협교류기금회는 문서사실증명 안건을 위임받은 경우 대륙의 문서 발급 기관에 증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적지 않게 곤란한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에서 쌍방은 승계, 입양, 혼인, 출생, 사망, 위탁, 학력, 거주, 친지부양 및 재산권과 관련된 증명서 부분을 상호 발송하여 문서의 진위를 대조하기 용이하게 하자는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향후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 대조 방식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상호 공문을 발송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민중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쌍방은 공증서 이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안전별로 협의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과거 오랫동안 양안간 문서사실증명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 2. 양안간 동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

현재 양안은 제3국을 경유하여 일반 서신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아직 동기우편물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서신이나 우편물 교환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그 주요 원인은 쌍방이 아직 동기우편물의 취급범위, 조사 및 보상 문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체결된 「양안 동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에서 쌍방은 동기우편물의 취급범위를 편지, 엽서, 인쇄물, 신문지, 잡지, 점자문건으로 하고, 대만과 대륙 이외의 제3지역을 경유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만약 동기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쌍방은 서로 협력하여 조사하고 조사의뢰서 접수후 30일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동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쌍방 발송책임자인 우정당국이 각자 발송인에게 보상하기로 하였다.

양안이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안 주민들은 안심하고 중요한 문건을 발송할 수 있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3.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양 기구는 설립 이래 해상범죄 공동대처, 문서 사실증명, 등기우편물 조사·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친 회담 이외에 기타 업무상 연락을 전화, 팩시밀리 혹은 서신에 의존하였다. 이를 통해 몇몇 안건을 해결하여 양안 주민의 권익보장과 양안관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 기구의 원만한 운영에는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을 제도화하여 양 기구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양안간 민간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협교류기금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부회장 또는 양 기구의 비서장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양 기구의 부비서장, 처장 그리고 주임급 임원은 3개월 마다 주관 업무와 관련된 회담을,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부비서장급 인사를 지정, 긴급 사안에 대한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쌍방 회담 참가자가 협정에 규정된 사유로 상대측 지역에  
진입할시 상호 출입국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4. 왕고회담 공동협정

이번 회담에서는 예비접촉에서 사전에 정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왕고회담 공동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서 쌍방은 금년내에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 지역에 진입한 인사의 송환과 이와 관련되는 문제», 「해상밀수범·납치범 공동대처 문제», 「양안 해상어업 분규문제 해결», 「양안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양안 사법기관 상호협력」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교·과학기술 부문에 있어서도 쌍방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한편, 청소년 교류, 양안 보도기관 교류와 과학기술 교류 등과 관련해서 연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대륙은 경제교류 부문에 있어서 대만 기업인의 투자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협교류기금회는 양안간 경제교류회의 개최 의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쌍방은 「양안간 경제교류를 강화하여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대륙투자 대만 기업인의 권익보장 문제·양안 상공업 종사자의 상호방문 문제 등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회담을 갖기로 한다」는 데는 합의하였다.

경제교류문제와 관련, 비록 쌍방은 구체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

였으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회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V. 회담의 의의와 영향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40여년의 분단으로 인하여 수 많은 문제와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양안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가 증진되게 되었다.

「국가통일장령」의 계획에 따라 호혜교류단계인 1단계에서는 양안이 각기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교류질서를 확립하고 교류의 규범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의거, 해협교류기금회는 1991년 2월 8일 정식 설립된 이후 양안간 교류의 중개자가 되었다. 10개월 이후 대륙도 이에 상응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하였다. 1년여의 교류가 진행된 후 양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마침내 회동하여 양안 교류질서와 관련한 업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4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회담을 민간의, 실무적, 경제적, 기능적 성격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나 양 기구 최고 책임자간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적어도 다음 4가지 의의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회담은 중국과 외국의 보도기자 280여명으로 하여금 취재경쟁을 벌이도록 하였다. 회담 기간동안 각 절차의 조정과 실질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들은 쌍방이 상호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한

다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중국 대내외의 보도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둘째, 이번 회담을 통해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적지 않은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회담 결과에 의거해 볼 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는 민간의, 실무적, 기능적, 경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이 회담기간중 양안간 직접적 「3통」문제를 의제에 상정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대만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셋째, 「왕고회담」 이후 양안 주민의 권익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 이후 양안 주민의 문서사실증명 관련 서한이 1만여건 이상 접수되었다. 이들 문서는 양안 주민의 권리·의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해협교류기금회가 개별 사안에 따라 문서의 사실증명을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대륙측이 회신한 것은 단지 5%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쌍방이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을 체결, 상대방 주민의 권익을 더욱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양 기구간 연락채널의 제도화는 양 기구간 이해와 교류의 제도화 그리고 교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돌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한 대륙 남방항공사와 하문항공사 비행기가 대북에 납치된 사건을 대만이 3~4시간내에 승객과 비행기를 대륙에 인도해 주었다. 이와같이 해협교류

기금회는 이미 설치된 채널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해협양안관계협회에 통지함으로써 양안간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0여년 동안 양안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하에서 생활해 왔다. 따라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해 왔다. 이와같이 상호간 충돌만 있었지 대화가 있을 수 없었고 상호 공존의식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년전 대만정부가 대만인의 대륙 친지방문을 허용한 이후에야 비로소 양안관계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왕고회담」을 계기로 4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양안간 긴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안은 오랜 기간동안 분단에 의해 조성된 상호 불신과 생활수준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내에 해소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쌍방은 시간을 두고 인내심과 민족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양안간 민간교류와 양안 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을 기회로 쌍방이 성의와 호의를 가지고 연락과 협상채널, 분쟁조절의 원칙과 방법을 제도화하고, 양 기구간 중재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양안간 교류에 따른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여 양안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쌍방이 점차 서로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양안관계를 「국가통일강령」중의 제2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VI. 부 록

1. 「왕고회담」 예비접촉 합의
2. 「왕고회담」 일정표
3. 양안 공중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
4.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
5.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6. 「왕고회담」 공동협정
7. 邱 부회장 겸 비서장 북경공항 도착 담화
8. 辜회장 싱가포르공항 도착 기자회견
9. 辜회장 제1차회담 관련 담화
10. 辜회장 「왕고회담」관련 기자회견
11. 辜회장 中正공항 도착 담화



## 1. 「왕고회담」 예비접촉 합의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부회장 邱進益과 해협양안관계협회 상무 부회장 唐樹備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왕고회담」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본회담의 절차문제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쌍방은 「왕고회담」을 민간의, 실무적, 경제적, 기능적 회담이라고 성격지우고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을 제도화하여 민간교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본회담 기간은 1993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하루를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邱進益 부회장과 唐樹備 부회장은 4월 23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왕고회담」 준비를 위해 2차 예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셋째, 본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로 결정하였다.

넷째, 본회담 참가자는 해협교류기금회에서 辜振甫 회장과 邱進益 부회장이, 해협양안관계협회에서는 汪道涵 회장과 唐樹備 부회장 및 鄒哲開 비서장 등이 참가하며 쌍방 참가인원은 각각 10명을 넘지 않기로 하였다.

다섯째, 본회담 의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양 기구의 업무문제

(가)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회담참가자의 상호 출입국 편의제공 문제

(나) 금년도 양안간 업무관련 의제

①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 지역에 진입한 인사의 송환 및 이와 관련되는 문제

② 해상밀수와 납치 등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

③ 양안간 해상 어업분규 처리문제

### 2) 경제문제

(가) 대만 기업인의 대륙투자 문제와 대륙 경제계 인사의 대

### 만방문 문제

- (나) 양안간 민간경제교류회의 공동개최 문제
- (다) 에너지와 자원의 공동개발 문제

### 3) 문교·과학기술문제

- (가) 청소년 상호 교류 실시
- (나) 과학기술 교류 실시
- (다) 양안 보도기관간 교류

여섯째, 쌍방은 본회담 기간중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과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쌍방은 본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하여 회담이 끝난후 발표하기로 하였다.

## 2. 「왕고회담」 일정표

날짜	회의 의 제, 절 차, 시 간					
4.23	09:00-11:30			15:30-17:15		19:00-21:00
	대표부 방문, 회담장 방문, 施澤吻 예방			邱·唐 예비협상		邱·唐 만찬
4.24	09:00-11:00			09:00-17:00		19:00-21:00
	許 처장·何武良·周寧·馬曉光 업무협상			邱·唐 예비협상		邱·唐 만찬
4.25	09:30-11:30			15:30-17:30		19:00-21:00
	李 부비서장·許 처장·何武良, 孫亞夫·周寧·馬曉光 업무협상			李 부비서장·許 처장·何武良, 孫亞夫·周寧·馬曉光 업무협상		주싱가폴 대만 대표처 인사 초청연회
4.26	08:00	10:00-12:00		15:00-15:30	16:00-18:00	18:00-19:30
	후회장 출발	李 부비서장·許처장·何武良, 孫亞夫·周寧·馬曉光 업무협상		후회장 싱가포르 공항도착, 기자회견	후회장·邱 부회장 李光耀 고문예방	陳 대표 환영 연회
4.27	10:00-11:30			15:00-17:00		19:30-21:00
	1차 회담(해황빌딩)			汪·辜 부부 다과 邱·唐 협상		汪道涵 주최 연회
4.28	09:00-11:00			15:00-17:00		19:30-21:30
	후회장 王鼎昌 예방 辜·汪 부부 聖淘沙島 방문 邱·唐 협상			2차회담(해황빌딩), 邱·唐 협상, 辜·邱·汪·唐 등 4인 30분 협상, 汪·후회담 전대표 대동 15분 회담, 邱·唐 협상		후회장 초청 만찬
4.29	10:40-11:00			전문안건 보고준비		회담 전문보고작성
	협정 체결					
4.30	08:45	09:30	10:55	15:20	15:30-16:00	17:00
	후회장·邱부회장 吳作東 예방	공항 출발	대북 향발	중정 공항 도착	기자회견	대륙위원회 보고

### 3.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그리고 중국 공증인협회는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조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연락주체

(가) 공증서 부분 발송과 사실증명 문제에 대해 쌍방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공증인협회 또는 관련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증인협회간에 연락을 취하기로 한다.

(나) 이번 협정 이외의 기타 유관문제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간에 연락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2) 공증서 부분 발송

(가) 쌍방은 승계, 입양, 혼인, 출생, 사망, 위탁, 학력, 거주, 친지부양, 재산권증명과 관련된 공증서 부분을 상호 상대방에 발송하기로 한다.

(나) 쌍방은 공증서 사용 목적에 따라 발송할 공증서 부분의 종류

를 결정한다.

### 3) 공증서 사실증명

#### (가) 사실증명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쌍방은 공증서 사실증명 확인을 상호 협조한다.

- ① 공증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②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른 기관이 공증했을 경우
- ③ 공증서의 내용과 호적자료 또는 기타 원본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 ④ 공증서의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 ⑤ 공증서에 기재된 문자와 인감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
- ⑥ 공증서 내용과 다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 ⑦ 기타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 (나) 거부사유

사실증명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공증서상에 기타 인

장을 찍은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요구받은 측은 사실증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부기해야 한다.

(다) 회신기한

사실증명 신청을 접수한 측은 접수 3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라) 사실증명 비용

사실증명을 의뢰한 측이 사실증명 접수측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증명의 비용단가와 지급방식은 쌍방이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

4) 문서양식

공중서 부분, 사실증명의 발송은 쌍방이 협상하여 적당한 문서양식에 의거해야 한다.

5) 기타 문서

쌍방은 공중서 이외의 문서에 대한 사실증명문제에 대해서는 각

안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6) 협정의 이행·변경과 중지

쌍방은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협정의 변경과 중지는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7)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이 즉각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8) 보완문제

본 협정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쌍방은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

#### 9) 발효

본 협정은 4월 29일 서명되고, 4부 작성되어 쌍방이 각 2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된다.

#### 4. 양안 동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그리고 중국 통신학회 우정전문위원회는 양 기구간 동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실시범위

동기우편물은 서한, 그림엽서, 우편엽서, 인쇄물, 신문, 잡지 그리고 점자로 한정한다. 이들의 교환량은 쌍방이 서면협의를 통해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 2) 연락방식

동기우편물의 조사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통신학회 우정전문위원회 또는 지정 우편처리기구가 서로 연락하여 처리한다.

기타 문제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상호 연락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3) 전달방식

등기우편물은 대만과 대륙 이외의 제3지역을 통해 교환한다.

### 4) 조사기한

등기우편물의 조사는 당초 발송인이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한다.

### 5) 회신기한

조사요구를 접수한측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 6) 검사요구서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발송되어온 등기우편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검사 요구서를 발송하고 상대측은 이에 대해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7) 각자 배상

등기우편물이 유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발송한측의 책임

자가 보상한다.

#### 8) 문서양식

쌍방이 자기측 우편관계에 따라 조사 양식, 검사요구서, 회신서 등을 인쇄하여 상호 인가한 후 사용한다.

#### 9) 협정의 이행과 변경 및 중지

쌍방은 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정의 변경과 중지는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0) 분쟁의 해결

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조속히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11) 보완사항

본 협정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은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

## 12) 발효

본 협정은 4월 29일 서명되고, 4부 작성되어 쌍방이 각 2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된다.

## 5.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연락과 회담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회담제도

해협교류기금회 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은 회담개최가 필요할 경우, 쌍방의 동의하에 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장소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해협교류기금회 부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부회장 또는 양 기구의 비서장은 원칙적으로 반년 마다 한차례씩 양안에서 번갈아가며 또는 제3지역에서 양 기구의 회담업무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양 기구의 부비서장, 처장, 주임급 인사가 주관 업무에 대해 매 분기에 양안의 적당한 장소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 2) 실무협의

쌍방은 양 기구간 교류중 발생하는 문제 또는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을 진행하고 협정문을 체결하기로 한다.

### 3) 전문소조

쌍방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각각 경제소조와 종합사무소조를 설치한다.

### 4) 긴급연락

쌍방은 각각 긴급사안의 연락을 담당하는 부비서장을 지정한다.

### 5) 출입국 편의

쌍방은 본 협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양 기구의 회담참가자를 위하여 출·입국 검사와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 6) 협정의 이행과 변경 및 중지

쌍방은 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정의 변경과 중지는 상호 동의를 거쳐야 한다.

### 7) 보완사항

본 협정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은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

를 통해 보완한다.

#### 8) 발효

본 협정은 4월 29일 서명되고, 4부가 작성되어 쌍방이 각 2부씩 보관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 6. 「왕고회담」 공동협정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辜振甫 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은 양측을 대표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은 민간의, 경제적, 실무적, 기능적 성격을 지닌 회담인 바, 해협교류기금회 邱進益 부회장과 해협양안관계협회 唐樹備 부회장 그리고 부회장 겸 비서장 鄒哲開 등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1) 금년도 협의의제

쌍방은 금년내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 지역을 진입한 사람을 송환하는 문제」, 「해상 밀수범과 납치범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 「양안 해상 어업분류 처리 협정」, 「양안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양안 사법기관간 협력」 등 의제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 2) 경제교류

쌍방은 양 기구간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여 대륙에 투자한 대만 기업인의 권익보호와 양안 상

공인의 상호방문 문제에 동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

### 3) 에너지·자원 개발과 교류

쌍방은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 4) 문교·과학기술 교류

쌍방은 청소년 교류와 보도기관간 교류 및 과학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연내에 청소년 재능경연과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청소년교류, 보도매체 책임자와 중견기자의 상호방문을 촉진하기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상호방문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연구 출판물 교환, 과학기술용어 통일 및 상품규격 표준화 문제를 협의한다.

컴퓨터와 기타 산업의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협의한다.

### 5) 발효

본 협정은 4월 29일 서명되고, 4부가 작성되어 쌍방이 각 2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된다.

## 7. 邱 부회장 겸 비서장 북경공항 도착 기자회견

먼저 해협양안관계협회 상무 부회장 唐樹備 선생과 비서장 鄒哲開 선생의 공동 초청에 대해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해협 교류기금회를 대표하여 대륙지역의 동포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협교류기금회 대표단이 이번에 북경에 온 임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륙의 적십자총회를 방문하고,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왕고회담」과 관련해서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예비접촉을 진행하며, 「양안 공증서 사용 사실증명」과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체결을 위한 예비접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해협 양안은 40여년 동안 분리되었는 바, 이는 중화민족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상호간 소원과 분단을 해소하고 양안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중국인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일위원회가 제정한 「국가통일강령」은 중국의 통일과정을 호혜교류, 상호신뢰협력, 통일협상 등 3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대계

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주요 목표는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하여 쌍방 사회의 번영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양안은 각기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역사적인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금후 쌍방은 흥금없이 더욱 실리적인 자세로 선의와 상호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나가서 양안관계의 튼튼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8. 辜 회장 싱가포르공항 도착 기자회견

오늘 본인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다시 오게되어 마음이 매우 유쾌합니다. 먼저 싱가포르 정부가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과의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담은 민간의, 실무적, 경제적, 기능적 회담입니다. 본회 부회장 겸 비서장 邱進益 선생과 해협양안관계협회 상무 부회장 唐樹備 선생이 이달 초순에 이번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져 7개항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쌍방이 이를 기초로 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양안관계의 미래에 건설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협 양안은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보다 진한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登輝 총통은 저에게 「대만과 모든 중화민족의 관계는 단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쌍방간 수십년의 분단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확실히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해협 쌍방이 흥금을 털어 놓고, 이성과 고도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리적 태도와 점진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정세를 종합해 볼 때, 「대결」의 시대는 지나고 「화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화해」는 점차 「상호호혜」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모두 대결의 논리를 벗어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고양해야 할 것입니다.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는 이제 역사적 일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나는 이 걸음이 양안의 중국인에게 희망과 강한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9. 汪 회장 제1차회담 관련 담화

汪 회장, 唐 상무 부회장, 龔 비서장, 邱 부회장 겸 비서장 그리고 신 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협양안관계협회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는 설립후 각기 주무기관의 위탁을 받아 민간왕래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 쌍방의 고위책임자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만나 협상을 개최하여 양 기구간 민간 교류의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의의가 매우 중대합니다.

작년 8월 汪道涵 선생이 서신을 통해 본인에게 양 기구의 업무와 경제·무역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회담이 양 기구의 상호관계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양 기구의 문서 사실증명과 등기우편물 관련 실무협상이 지연되어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회담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3월말의 실무협상이 근본적 합의에 도달하고, 邱 부회장과 唐 상무 부회장이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비접촉을 개최하여 7개항의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를 기초로 오늘 본인과 汪 회장이 양 기구의 업무 문제, 양안간 경제·무역, 사회, 문교, 과학기술 교류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본인은 양 기구간 연락과 협상제도를 구축하여 양안 민간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 기구는 설립 이래 양안 해상범죄 공동 처리, 문서사실증명과 양안 등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에 대해 몇 차례 직접 협상한 것 이외의 기타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화와 팩스에 의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몇몇 안전을 해결하여 주민의 권익보장과 양안관계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회담, 실무협상, 긴급연락 등 각종 레벨의 연락·협의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쌍방 회담참가자의 출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원칙하에 상대방에게 출입국상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한 제1차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이 서명·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 기구간 민간교류의 확대는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교류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점은 적절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1) 불법 입국자의 송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입국한 자의 송환문제에 대해서 쌍방 적십자총회 사이에 「金門協議」를 체결하여 이미 발효되었으나,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 위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지 못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협정 집행방식을 잘 분석·검토하여 쌍방이 파견하는 항공편 또는 선박을 통해 송환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양 기구가 이 문제를 담당·처리하는 과정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 2) 해상범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처

우리측 실무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해상에서 어선이 납치되는 사례가 30여회나 되며 심지어는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해 양안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안의 불법분자가 공모하여 각종 물품(심지어는 무기, 독약 포함)을 밀수하고 있는 바, 이는 양안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질서 유지에 위협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해상 어업분쟁의 처리

양안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어서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종 마찰이 발생하여 쌍방안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륙 어민들이 대만 어민을 임의로 억류 또는 자산을 압수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써 양안 어민간 긴장을 야기하였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閔獅漁2294·2295」와 「閔連漁0945·0946」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측과 우리측이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안은 각기 중요한 경제적 자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 다른 발전 모델과 체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상호 관계보완을 활용하여 실리를 얻기 위해 대만 기업인이 자본과 기술을 대륙에 투자함으로써 양 기구간 경제교류의 일보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안의 현 상황은 상호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대륙투자 대만 기업인의 권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여 법률상, 행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 기구간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세법, 세금징수 규정과 보상, 경제·무역 분류의 공정한 해결, 경영상의 이윤과 관련한 법규의 투명성 보

장 및 대만기업협회 설립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협교류기금회는 대만정부가 이미 기업인의 대륙투자 제한을 점차 완화한 점에 비추어 양안 기업인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고 귀족과 공동으로 민간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자원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우리민족의 주인으로서 양안의 주민간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상호 교류는 특히 중요합니다. 토론회, 체육경기, 도서자료의 교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매체를 통해 양안 문제에 대한 보도를 확대하는 것은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대만 기자가 대륙에 파견되어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대만 취재 대륙 기자는 많지 않은 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안은 서로 각 영역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양 중국인의 지혜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쌍방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汪道涵 회장과 본인은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논의

를 가졌으며, 세부문제는 邱 부회장과 唐 상무 부회장이 계속해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담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를하기를 기대합니다.

## 10. 후 회장 「왕고회담」관련 기자회견

기자 여러분

본인은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를 대표하여 해협양안관계협회 汪道涵 회장과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싱가포르 海皇빌딩에서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오전에 서명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양 기구간 민간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관계 인사들은 2차례의 예비접촉과 이틀간에 걸친 본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담이 원만하게 끝나게 되는데 대해 본인은 안도와 기쁨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 기구간 교류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문제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실리적 자세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해결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중 우리는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협정」에 서명하고 회담, 실무협상, 긴급연락 등 회담제도를 구축하였으며, 회담 참가자에 대해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양안간 및 양 기구간 교류의 제도화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중 우리는 「양안 공중서 사용 사실증명 협정」과 「양안 등

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협정」에 정식 서명하여, 공중서 부분을 상호 발송하여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등기우편물을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 기구간 문서 사용, 중요한 서한의 발송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협의하여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쌍방은 금년내에 「규정을 위반하고 상대방 지역에 진입한 인사의 송환과 이와 상관되는 문제」, 「양안 해상밀수·납치 등과 관련된 범죄활동에 대한 처벌문제」, 「양 기구간 해상어업분쟁의 처리문제」, 「양 기구간 지적재산권 보호」 및 「양안 사법기관간 협조」 등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이 축적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문제의 소재를 직시하여 하루빨리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만기업인의 대륙투자 보장문제에 대해 우리는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대륙측은 대만기업인이 이미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대륙투자 대만기업인이 대륙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 협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고 대륙도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이 문제에 대해 양측간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계속 논의하여 양 기구간 경제교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되기를 회

망합니다.

문교·과학기술 부문에서 쌍방은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외에 문교, 신문, 과학기술 등 3분야에 각각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연내에 청소년교류, 청소년 재능경연과 상호방문, 신문매체 책임자와 중견기자의 상호방문, 과학기술자 상호방문, 과학기술 출판물 교환, 과학기술용어 통일과 산업과학기술 규격 표준화문제를 협의하고 컴퓨터와 기타 산업과학기술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4개의 협정서에 서명하고 적지 않은 원칙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본회담의 전 과정이 매우 투명하여 회담이 민간의, 실무적, 기능적, 경제적 성격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소수인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몇 문제에 대해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번 회담에서 양안 교류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중 쌍방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를 구축하여 각종 문제를 순서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양안의 민간교류를 본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동시에 각 기관의 관심에 대해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11. 辜 회장 中正공항 도착 담화

본 해협교류기금회 대표단은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정책지도 아래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협양안관계협회 관련 인사들과 두 차례에 걸친 예비접촉과 이들간의 본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회담 결과는 원만하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본인은 전국 동포와 조야 각계인사의 관심과 지지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양안 공중서 사용 사실증명」, 「양안 동기우편물 조사·보상문제」, 「양 기구간 연락과 회담제도」 및 「왕고회담 공동협정」 등 4개의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쌍방은 금년내에 5개의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쌍방이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합하여 민간 사이의 빈번한 교류중에 발생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문교와 과학기술 부문에서 쌍방은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외에 문교, 신문, 과학기술 3개분야에서 각각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기금회는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대만기업인의 대륙투자 보장문제를 제삼 요구하고, 대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보호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쌍

방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담은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잘 보장되었습니다. 본 기금회는 적어도 매일 세차례의 신문브리핑을 통하여 국내외와 대륙 신문매체 기자들에게 회담의 진전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본인, 邱 부회장 그리고 기타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 대해 즉각 대륙위원회 黃주임에게 보고할 것이며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원 連원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吳作東 총리가 특별히 본인과 邱 부회장을 접견하였습니다. 우리는 吳 총리에게 「왕고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한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汪辜會談 概要

(중국·대만간 싱가포르 회담)

발행일 : 1993년 12월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인쇄소 : 원단기획 인쇄공사(269-8412)

